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(도봉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·서윤기·이순자
문영민·김광수(도봉)·김기대
김창수·김혜련·박기열
이윤희·우창윤·이숙자
김제리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에서 규정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의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에서 60일 전까지로 앞당길 필요 있으며, 의회의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의회의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(안 제53조의2 신설)
- 나.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(안 제55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서류제출요구)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55조의2의 제목 “(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)”을 “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55조의2(<u>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</u>) <u><신 설></u></p> <p><u>①</u> · <u>②</u> (생략)</p>	<p><u>제53조의2(서류제출요구)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5조의2(<u>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</u>) <u>①</u>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</u> · <u>③</u>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p>